

—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—

## 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7일

제안 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종전의 「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를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재정공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주요 내용

○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2조)
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

○ 위원회 기능(안 제3조)

-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
-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

검토 의견

-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제정 조례안은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, 채권·채무현황 등 지방재정운용상황과 주민관심사항 등을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※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70조(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공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위원회 구성 및 기능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의견청취, 수당지급 등이 주내용으로서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“충청북도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”가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.
- 위원회 심의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, 정기회는 년 1회, 임시회는 위원장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한편, 공시방법과 공시시기에 관해서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

조와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조문에서는 생략된 것으로 이해됩니다.

- 검토결과, 지방재정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 공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.
- 다만, 조례 시행에 따른 앞으로 지방재정공시 추진일정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며, 구체적인 공시시기와 공시내용 및 범위,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